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

[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. 8. 31. 2010고단82-1(분리),2010고단313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신은식

【변 호 인】변호사 나기태(국선)

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.

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0년 압 제34호의 증제1호 및 같은 지청 2009년 압 제498호의 증 제1 내지 4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금 742,500원을 추징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【이유】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